

[무배당 다이렉트퍼스트당뇨보험1002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장기보험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다이렉트퍼스트당뇨보험1002
3.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의 신체, 법률상의 배상책임,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 구 분 | | 보험기간 | 보 험 료 납입기간 | 보 험 료 납입주기 | 가입연령 | | |
|-------------------|--------------------|---|----------------------|---------------|------|----------------|----------|
| 보통약관 | 상해사망 | 80세만기 | 80세납 20년납 10년납 | | | | |
|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해 | | | | | | |
| | 중대한뇌졸중진단 | | | | | | |
| | 말기신부전증진단 | | | | | | |
| | 발목이상 당뇨병성족부절단 | | | | | | |
| | 질병실명 | | | | | | |
| | 암진단 | | | | | | |
| | 질병사망 | | | | | | |
| | (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 | | | |
| | (갱신형)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 | | 5년만기 (자동갱신) | 월납 연납 |
| | (갱신형)벌금* | 보통약관 만기기준 잔여보험기간 (5년미만)은 1~4년만기 | | | | | |
| (갱신형)방어비용* | | | | | | | |
| (갱신형)면허정지위로금* | | | | | | | |
| (갱신형)면허취소위로금* | | | | | | | |
| (갱신형)자동차보험료할증위로금* | | | | | | | |
|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 | | | | | | |
| (갱신형)골절화상수술비 | | | | | | | |
| 제 도 성 특별약관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 | | - | - | | | |
| | 보험료자동납입 | | | | | | |
| |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 | | | | | | |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 | | | | | |

주) *표의 갱신형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보험료할증위로금)은 자가용 운전자만 가입 가능함.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정의 :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1) 주, 부상병이 당뇨병으로 보험계약 청약일 현재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 (2) 의무기록상의 혈당 검사결과가 공복혈당 126 mg/dL 이상 또는 무작위-식후2시간혈당 200 mg/dL 이상인 경우
 - (3) 위 (1)에서 당뇨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 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없음

8. 갱신행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보험료할증위로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화상수술비)에 관한 사항

(1) 갱신행보험료의 계산 및 납입

상기(갱신행) 특별약관의 “보험료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는 갱신행 현재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로 적용하며, 갱신행보험료 변경시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함

(2) 갱신행보험료의 안내

회사는 갱신행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행보험료를 서면으로 통보함

9. 질병사망 특별약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운용함

(1) 보험기간은 80세 만기 이내로 함

(2)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3)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10.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과 함께 의무부가 하며,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보통약관 가입금액과 동일하게 설계함.

11. 기타

(1)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써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짐.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2)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